

제32호(2017. 4. 28.)

# 2017년 국제개발협력사업 농업분야 시행계획과 시사점

허장 홍석현



1. 배경과 목적 .....	1
2. 2017년 국제개발협력사업 개요 .....	3
3. 농업 관련 사업 .....	5
4. 농업 관련 부처 사업 .....	8
5. 시사점 및 과제 .....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구자춘 부연구위원	061-820-2023	selenium78@krei.re.kr
내용 문의	허 장 선임연구위원	061-820-2657	heojang@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농업 관련 ODA 사업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이외에도 외교부(KOICA), 기재부(EDCF),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실시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17년 ODA 사업은 계속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다자원조의 비중과 무상원조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서는 다자원조의 비율을 25% 이상, 무상원조의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유하고 있음.
-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농림수산 분야는 전체 ODA 예산의 1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 그러나 개도국 경제가 대부분 농업에의 의존도가 높고 농촌지역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의 예산 규모가 더욱 늘어날 필요가 있음.
- 2017년도 시행계획에서 농업 관련 사업만을 추출하여 분석해보면 207개 사업 2,084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기재부(EDCF)와 외교부(KOICA)의 유상, 무상원조 사업이 전체의 61.6%를 차지함.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농림업 관련 중앙부처의 비중은 전체의 28.7%임. 우리나라 ODA 전체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에서도 기재부, 외교부 두 부처가 주도하고 있는 형태임.
- 사업유형별로는 프로젝트형 위주이며, 건당 사업비가 소규모인 기술협력 사업이 예산 기준으로 17% 정도를 차지함. 아울러 양자원조에 심하게 편중되어 그 비중이 95% 이상임. 국제사회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다자원조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농림업 관련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사업만을 별도로 분석해보면,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프로젝트형 사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농촌진흥청은 농업 R&D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기술협력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 부처 모두 양자원조 사업이 대부분인 가운데 산림청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형태로 진행되는 다자성 양자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음. 다자성 양자사업은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외교부의 지침에 따라 '순수' 다자사업과 정확하게 구분하였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1. 배경과 목적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상원조, 무상원조 시행계획을 종합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확정, 발표함.
  - 해마다 3월~5월경 부처별로 제안된 국제개발협력(ODA) 시행계획은 외교부(무상원조 주관기관)와 기획재정부(유상원조 주관기관), 국무조정실의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유·무상 종합심사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이 만들어짐.<sup>1)</sup>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면 그 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기재부)로 송부되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시행계획 수립절차는 아래 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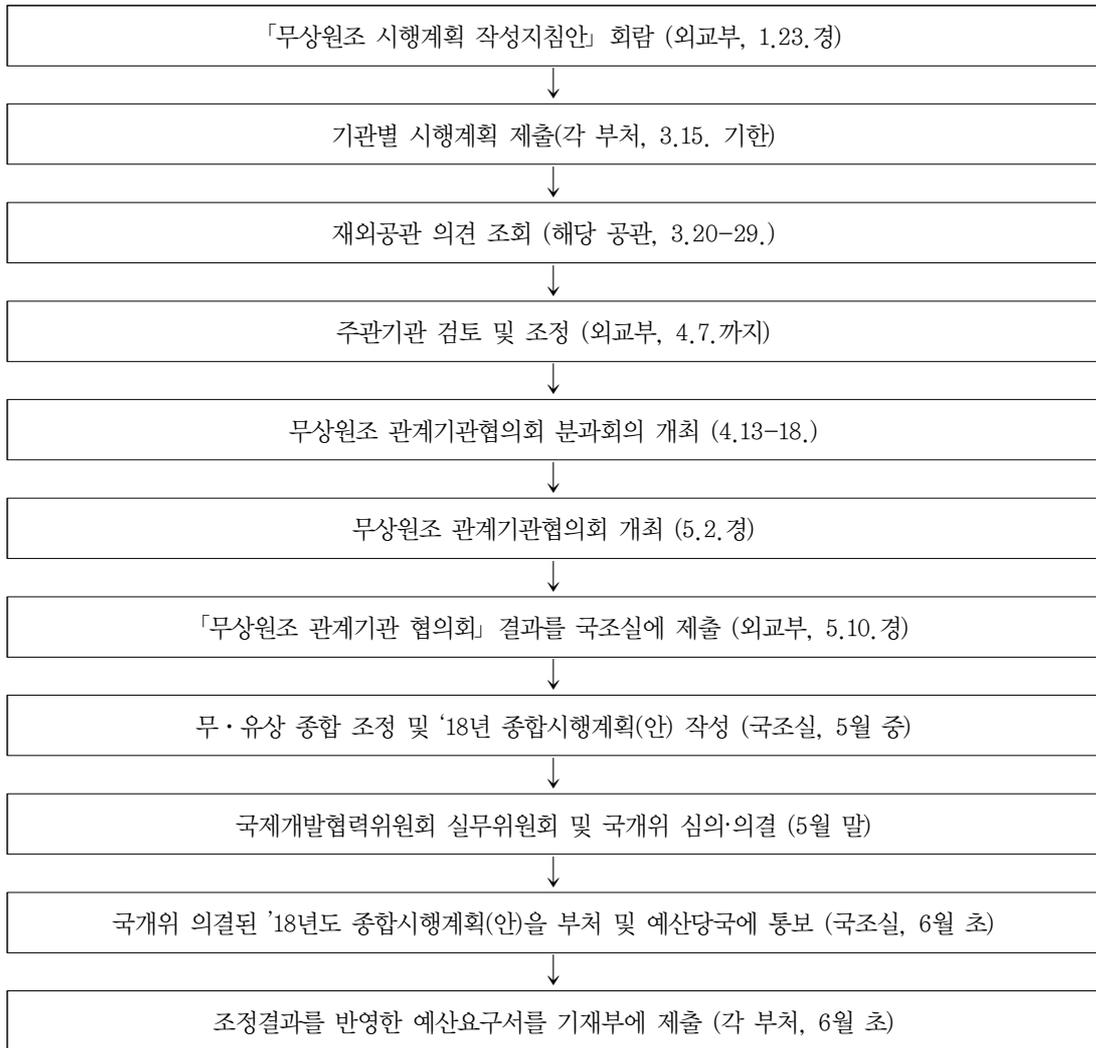
표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관련 조항

<p>제11조 ①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

-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ODA 사업 시행기관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이외에도 외교부(KOICA), 기재부(EDCF),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으며, 사업의 형태도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등 다양함.
- 이 글의 목적은 2017년도 우리나라 ODA 시행계획상의 사업 동향을 소개하고 농업·농촌개발 분야에서의 사업의 유형, 내용 등을 검토함으로써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1)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상대방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경제·사회적 협력을 뜻하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정부 등 공공의 재정으로 상대방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양허성 원조(무상, 유상)를 뜻함. 따라서 전자가 후자를 내포하는 개념이나, 이 글은 우리나라 정부에 의한 유상·무상원조를 다루고 있으므로 두 개념을 혼용하고자 함.

표 2. 종합시행계획 수립절차



자료: 외교부(2017), 「2018년도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지침(2017.1.23.)」.

## 2. 2017년 국제개발협력사업 개요

- 2017년 우리나라 ODA 사업의 수는 1,243개 사업이고, 예산상으로는 2조 6,367억 원이며, 전년보다 금액상으로 8.1%가 증가하였음. 국제사회가 국가별 ODA 규모의 비교 기준으로 삼는 ODA/GNI 비율은 GNI 규모가 추정되어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나, 대체로 0.15% 정도일 것으로 보임.
-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비율은 약 81:19,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비율은 약 55:45임.
  - 우리나라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75:25(양자:다자), 60:40(무상:유상)에 비해서는 아직 다자원조, 무상원조의 비중이 낮음. 국제사회에서의 요구도 다자원조 및 무상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표 3. 연도별 ODA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ODA(십억 원)	1,466.7	1,798.6	1,921.4	1,955.2	2,161.9	2,439.4	2,636.7
양자원조	1,095.8	1,332.1	1,433.4	1,469.8	1,649.8	1,947.9	2,130.0
비중(%)	(74.7)	(74.1)	(74.6)	(75.2)	(76.3)	(79.9)	(80.8)
무상원조	636.7	804.9	885.5	930.5	1,016.0	1,054.2	1,175.5
비중(%)	(58.1)	(60.4)	(61.8)	(63.3)	(61.6)	(54.1)	(55.2)
유상원조	459.1	527.3	547.9	539.3	633.8	893.7	954.5
비중(%)	(41.9)	(39.6)	(38.2)	(36.7)	(38.4)	(45.9)	(44.8)
다자원조	370.9	466.4	487.9	485.4	512.2	491.5	506.7
비중(%)	(25.3)	(25.9)	(25.4)	(24.8)	(23.7)	(20.1)	(19.2)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양자원조를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전체의 58%를 차지함.
  - 그러나 ODA 사업 대상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업('미지정'),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다지역')이 28.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비중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미지정, 다지역 사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아시아의 비중은 감소, 아프리카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 즉, 아시아 비중 43.8%('16) → 38.1%('17), 아프리카 비중 18.7%('16) → 20.1%('17)임.
- 양자원조에서 분야별로는 교통, 보건, 공공행정 등이 각각 12%대로 비슷한 비중이며, 농림수산, 수자원, 교육, 에너지 등이 각각 7~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여기서도 분야 구분이 어려운 사업('기타')이 22%에 이룸. 2016년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교통이 13.5%이고 교육, 보건, 에너지, 수자원, 공공행정, 농림수산이 각각 8~10% 대의 비중을 보였음(관계부처 합동, 2015,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또한 다년도에 걸쳐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연차별 투입금액이 달라지므로 그에 따라 분야별 사업예산의 비중이 시기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별 사업비 현황과 마찬가지로, 분야별 사업비 현황도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 정보로 이해하여야 할 것임.

표 4. 지역별 사업비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기타
규모(억 원)	8,118	4,290	1,064	1,588	74	6,166
비중(%)	38.1	20.1	5.0	7.5	0.5	28.9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표 5. 분야별 사업비

구분	교통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수자원	교육	에너지	인도적 지원	환경	기타
규모(억 원)	2,638	2,598	2,578	2,119	2,111	1,859	1,506	900	255	4,737
비중(%)	12.4	12.2	12.1	9.9	9.9	8.7	7.1	4.2	1.2	22.2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한편 ODA 사업들을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17개의 목표에 따라 분류해 보면, 전체 사업비 중 약 72%인 1조 8,985억원이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산업화(목표 9), 빈곤퇴치(목표 1), 보건(목표 3), 교육(목표 4), 물과 위생(목표 6) 분야의 비중이 높음.

표 6. SDGs 목표별 사업 수 및 사업비

목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사업 수 (개)	176	128	119	123	14	61	22	49	140	13	33	1	35	5	12	113	52
규모 (억 원)	2,718	1,503	2,372	2,296	93	2,277	941	374	4,449	30	747	4	170	53	122	688	141
비중 (%)	14.3	7.9	12.5	12.1	0.5	12.0	5.0	2.0	23.4	0.2	3.9	0.0	0.9	0.3	0.6	3.6	0.7

\* SDGs 17개 목표: ① 빈곤퇴치 ② 기아와 농업 ③ 보건 ④ 교육 ⑤ 양성평등 ⑥ 물과 위생 ⑦ 에너지 ⑧ 경제성장 ⑨ 산업화 ⑩ 불평등 ⑪ 지속가능도시 ⑫ 지속가능소비생산 ⑬ 기후변화 ⑭ 해양자원 ⑮ 생물다양성생태계 ⑯ 평화제도 ⑰ 이행수단글로벌파트너십  
 자료: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3. 농업 관련 사업

### 3.1. 농업 관련 사업의 기준

- 아래에서는 2017년도 종합시행계획상의 기관별 ODA 예산계획(안) 자료를 사용하여 농업 관련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였음. 이 자료는 유상과 무상원조, 양자와 다자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UN 기구 등 ODA 적격 국제기구(가령, FAO, IFAD, WFP 등), NGO에의 지원 예산도 포함한 것임.
  - 국제기구 분담금 등 지원의 경우 OECD DAC의 통계기준에 의거, 대상기관의 특성에 따라 ODA 계상 비율이 100%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실제 지원 금액의 일부만 ODA로 계상되는 경우가 있음(가령, FAO는 51%, IFAD와 WFP는 100%).
- 농업 관련 사업은 다음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업들임.
  - 농업, 임업, 축산업 및 농촌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포함함. 따라서 수산, 해양 관련 사업은 제외함(가령, 「탄자니아 잔지바 양식개발 지원사업」은 제외).
  - 식품분야 등 유관분야에서는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등 소속기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의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포함함.
  - 수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대개 농업용수 확보의 목적이 핵심이거나 농업용을 포함한 다목적 개발인 경우가 많으므로 명확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포함함(가령, 「라오스 남능강 유역 통합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은 포함).
  - 식수개발 등 지역개발의 경우 명확하게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닌 경우 포함함(가령, 「에티오피아 SNNPR 구라게존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은 포함).
- 한편 사업 유형별로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 초청연수, 장학지원, 봉사단 파견, 행정비용, 기타 등 모든 유형을 대상으로 함.

### 3.2. 기관별, 사업유형별, 양자·다자 구분별 현황

- 2017년 농업 관련 사업(농업, 임업, 축산업, 농촌개발 등)은 총 207개 사업, 2,08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다자원조를 포함한 전체 ODA 예산(2조 6,367억 원)의 7.9%를 차지함.

표 7. 농업 ODA 기관별, 사업유형별, 양자·다자 구분별 현황

구분		2017년 예산(억 원)	비율(%)	
기관별	기재부	536	25.7	
	외교부	805	38.6	
	농식품부	271	13.0	
	농촌진흥청	188	9.0	
	산림청	140	6.7	
	행정자치부	32	1.5	
	지방자치단체	64	3.1	
	기타	49	2.3	
	계	2,084	100.0	
사업유형별	개발건설형	218	10.5	
	기타기술협력	11	0.5	
	민관협력	4	0.2	
	초청연수 및 장학지원	124	5.9	
	프로그램	13	0.6	
	프로젝트	1,611	77.3	
	행정비용	7	0.3	
	기타	95	4.6	
	계	2,084	100.0	
양자·다자 구분	다자	95	4.6	
	양자	다자성 양자	101	4.8
		양자무상	1,352	64.9
		양자유상	536	25.7
	계	2,084	100.0	

- 기관별로는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을 통해 유상원조 차관을 제공하는 기재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통해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외교부의 예산이 전체의 61.6%를 차지하며, 농식품부는 13.0%인 271억 원임.
  - 농식품부는 FAO 분담금을 112억 800만 원의 규모로 부담하고 있으나, OECD DAC 통계 기준상 51%인 57억 1,600만 원만 ODA로 계상함.
  -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포함하여 농림업 관련 중앙부처가 전체의 28.7%인 599억 원임.
  - 금액상 우리나라 ODA 전체와 마찬가지로 무상원조 전문기구인 KOICA와 유상원조 전담기구인 EDCF가 농업분야에서도 분야별 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형태임.
- 사업유형별로는 프로젝트형 사업이 절대 다수이며, 장학지원을 포함한 초청연수가 5.9%에 해당함.
  - 국제적 추세가 재원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수원국의 일반 혹은 특정 분야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형 원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농업분야에서는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0.6%에 그치고 있음.
  - 민관협력으로 분류된 예산은 교육부의 사업 1건(‘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미얀마 식물유전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보급’, 4억 원)

- 개발컨설팅과 기타기술협력(타당성조사, 사후관리 및 평가 포함), 초청연수, 장학지원 등 넓은 의미에서의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에 속하는 사업은 건수로는 78건(전체 207건의 37.7%)이나 예산상으로는 17%인 353억 원 정도로, 건당 사업비가 소규모임.

표 8. 사업유형 및 내용

유형	내용
개발컨설팅	수원국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 정책 자문 등 기술용역 제공
기타 기술협력	개발컨설팅,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이외의 기술협력(국내외 교육성 워크숍 개최 등) 순수 기타 기술협력만 인정되며, 총 사업 규모가 20만 달러 미만인 경우
민관협력	국내외 NGO에 대한 지원, 기업 CSR 사업지원 등
초청연수 및 장학지원	(초청연수) 수원국 국민을 국내에 초청하거나, 국내 전문가를 현지로 파견하여 지식·기술전수 (장학지원) 수원국 유학생의 학위과정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소속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수원국의 개발계획 일반 또는 특정 분야 개발계획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지원함. 일반예산 지원, 국제수지 재정지원, 수입 지원, 자본재 및 물자지원 등의 일반 프로그램 원조와 농업, 교육, 교통 등 특정 산업 및 분야를 지원하는 분야별 프로그램 원조로 구분
프로젝트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특정 시설·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 및 이와 관련된 기술전수 등, 건당 규모가 최소 20만 달러 이상 되는 사업을 권장
행정비용	공여국 내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개발원조 관련 기타비용

자료 : 외교부(2017), 「2018년도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지침(2017.1.23)」; 대외경제협력기금(2016), 「숫자로 보는 ODA」.

- 양자원조, 다자원조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농업분야 ODA 전체 예산의 4.6%만 다자원 조 사업으로, 양자원조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음. 양자원조 사업으로 분류되는 다자성 양자(multi-bi) 사업은 4.8%임.
  - 다자성 양자를 제외한 양자원조 사업의 경우, 무상원조가 유상원조의 두 배를 훨씬 넘는 규모임.
  - 국가 전체의 ODA의 경우, 다자원조가 19.2% 정도이고 유상원조가 44.8%인 것과 비교할 때, 농업분야 ODA는 다자원조 비중은 상당히 낮은 반면, 무상원조의 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제사회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농업분야에서는 무상원조 위주의 사업추진은 현재의 비중을 유지하되, 다자원조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9. 다자원조와 다자성 양자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여국이 국제기구(NGO, PPP 등 포함)를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다자원조(multilateral aid)는 △공여국이 특정 용처(지역, 국가, 분야 등)를 지정하여 기여(earmarked, non-core contribution)하는 다자성 양자 사업(multi-bi)과 △공여국이 특정 용처를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기구가 자유롭게 용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여(non-earmarked, core contribution)인 다자 공적개발원조(multilateral ODA, 순수다자 혹은 다자)로 구분함.</li> <li>○ OECD DAC 통계기준에 따르면,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이라도 공여국이 특정 용처를 지정하여 기여하는 다자성양자 사업의 경우 다자 ODA가 아닌 양자 ODA로 분류(외교부, 2017, 「2018년도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지침」, p.11)</li> </ul>
---

## 4. 농업 관련 부처 사업

- 이하에서는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농업, 농촌개발 관련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자 함.
- 농식품부는 39개의 사업에 271억 원, 농촌진흥청은 30개 사업에 188억 원, 산림청은 14개 사업에 140억 원임.
  - 사업당 예산은 각각 6.9억 원, 6.3억 원, 10억 원 정도로, 산림청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당 규모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에 비하여 큰 편임.
- 사업유형별로 볼 때,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프로젝트형 사업, 농촌진흥청은 개발컨설팅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농촌진흥청의 경우 프로젝트로 분류된 사업 3건은 권역별(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KAFACI, COLFACI) 운영비용으로서, 실제로는 기술협력에 가까우므로 거의 대부분 (넓은 의미의)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산림청은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등의 단위 사업당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큰 프로젝트 위주로 수행함.

표 10. 농업 관련 부처의 사업유형별 현황

	사업유형	사업 수(건)	예산(억 원)
농식품부	프로젝트	24	152
	개발컨설팅	3	12
	기타 기술협력	3	7
	초청연수	5	4
	행정비용	1	7
	기타(분담금)	3	89
	계	39	271
농촌진흥청	프로젝트	3	72
	개발컨설팅	20	109
	기타 기술협력	6	4
	기타	1	3
	계	30	188
산림청	프로젝트	12	131
	개발컨설팅	1	6
	기타(분담금)	1	3
	계	14	140

- 양자 혹은 다자원조의 현황을 보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의 경우 양자무상 지원사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산림청의 경우에는 다자성 양자(multi-bi) 사업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림청의 다자성 양자 사업은 창원이니셔티브, FAO 협력, 산림생태계 복원 이니셔티브, 아시아 산림협력기구(AFoCo) 협력,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국제산림연구센터(CIFOR) 등과 같은 국제기구, 이니셔티브와의 협력사업이 다수 있음.
- 3개 부처 모두 양자유상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 농업 관련 부처의 양자·다자별 현황

	양자·다자 구분	사업 수(건)	예산(억 원)
농식품부	다자	3	89
	다자성 양자	4	22
	양자무상	32	160
	양자유상	0	0
	계	39	271
농촌진흥청	다자	1	3
	다자성 양자	5	2
	양자무상	24	183
	양자유상	0	0
	계	30	188
산림청	다자	1	3
	다자성 양자	7	78
	양자무상	6	59
	양자유상	0	0
	계	14	140

- 한편, 국제기구 등에 대한 분담금의 경우 다자, 다자성 양자의 구분이 외교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외교부 개발협력국, 2017, 「2018년도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지침」).
  - 농식품부의 사업에서는 FAO, IFAD, WFP 등 기구에 대한 분담금이 다자로 분류되어 있고, FAO, IFAD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다자성 양자로 분류되어 있음.
  - 농촌진흥청의 경우 ‘국제농업연구자문단(CGIAR) 분담금’은 다자인 반면, 아태식량비료기술센터(FFTC),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AVRDC),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OECD 농약작업반 등의 사업, 아태농업연구기관협의회(APAARI) 등에 대한 분담금은 다자성 양자 사업으로 분류됨.
  - 산림청의 사업에서 ‘ITTO 의무분담금’은 다자, ‘CIFOR 의무분담금 지원’은 다자성 양자로 분류됨.
- 3개 부처를 제외하고 다른 정부부처(교육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환경부)가 시행하는 농업 관련 사업 가운데에는 다자다자성 양자 원조 사업이 전무함.
  - 일반 정부부처가 시행하는 국제기구와의 다자성 사업은 주로 의무분담금에 대한 출연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즉, 농업 관련 ODA의 다자다자성 양자사업은 농업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내 농업 관련 부처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음.

## 5. 시사점 및 과제

- 농업 관련 ODA 사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2017년 ODA 사업은 지금까지의 증가추세를 이어 계속 그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아직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원조의 구조(aid architecture)의 개선은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아직도 다자원조의 비중이 낮고 무상보다는 유상원조의 비중이 높아서 국제사회의 개선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농림수산 분야는 전체 ODA 예산의 1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대체로 개도국은 농업의 생산성이 낙후되어 그 산업구조상의 비중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음. 아울러 도시화가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진행과정에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상당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으며, 그 효율성도 높을 것임.
-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도 기재부(EDCF)와 외교부(KOICA) 등 유상무상원조 주관기관의 사업이 전체의 60%를 넘고 있음. 농업과 농촌개발 부문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농림업 관련 중앙부처 원조사업의 비중이 적절히 제고되거나 주관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임. 이는 부처 간 협업과 사업연계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농림수산 분야 ODA 사업은 양자원조에 심하게 편중되어 95%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무상원조의 비중은 매우 높음. 국제사회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무상원조의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자원조의 비중은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농업부문 내 부처별 사업을 보면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프로젝트형 사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농촌진흥청은 농업 R&D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기술협력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부처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형 사업이 KOICA의 무상원조 사업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이들 농업부문 부처들은 모두 양자원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한편 산림청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성 양자 사업도 일부 추진하고 있음. 다자성 양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보면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다수 있는데 ‘순수’ 다자협력사업과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

## KREI 현안분석 제32호

2017년 국제개발협력사업 농업분야 시행계획과 시사점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7. 4. 28.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김수석, 마상진, 황윤재, 이대섭, 지인배, 심재현, 구자춘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mailto:admin@han-d.co.kr)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